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8월 27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부 활용촉진과 신동준 과장(2110-4511), 유동훈 사무관(4508)
경기도 교류통상과 김현수 과장(031-8008-2190), 이선화 주무관(2458)
경기FTA활용지원센터 정석기 센터장(031-259-7200), 오재만 팀장(7204)

수출협력업체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된다.

–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 MOU 체결 및 중소협력사 간담회 개최 –

1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및 중소협력사 간담회 개최

□ **산업통상자원부, 경기도,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** 3개 기관은 수출협력업체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**제3자 확인 시범사업**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, **업무협약**을 **체결**

* 일시/장소 : 8.27(화) 10:00/경기FTA활용지원센터(수원 한국나노기술원2층)
** 참석(서명) : 산업부 무역투자실장, 경기도 경제부지사, 경경련 사무총장
***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(경경련) :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운영기관

○ 산업부와 경기도는 재정·행정적 지원을 하고, **경기FTA활용지원센터 주관**으로 연말까지 도내 **100여개 협력사에게** 원산지확인서 **제3자 확인서비스**를 **제공**할 계획

□ **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**은 협약식 후 간담회에서 **제3자 확인사업**이 잘 정착되어 **중소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**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, 정부도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함

2 원산지확인서 발급상의 문제점

□ **협력사**는 FTA로 인한 직접혜택*은 없는 반면, 확인서의 적합성 검증을 이유로 한 **수출자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대한 거부감**과 **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발급에 소극적**

○ 또한, 높은수준의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원산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**전문직원의 부족과 업무증가·비용부담** 등도 원인

*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부가세 세액공제가 있으나, 실질적 혜택이 미흡(건당 1만원, 연간최대 30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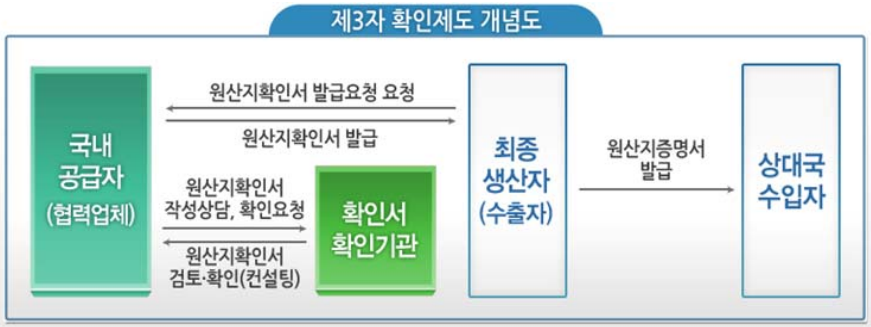
□ **수출자**는 협력사가 근거서류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판단없이 발급하는 **확인서**의 **신뢰성**에 대한 **의심**으로 **추가적인 증빙자료**를 **요구**하는 경향이 있음

○ 이는 원산지 **사후검증시** 잘못 작성된 확인서로 인한 **추징금**과 수출기업의 **대외 신인도 저하** 등에 대한 **우려** 때문

3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이란?

□ **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**(경기FTA센터)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**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**을 **검토·확인**

○ **확인기관**(전문관세사)이 요청기업의 **원산지확인서와 근거서류**를 **검토**하여 **원산지 판정**이 **적합**하게 이루어졌다는 **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**를 **무료로 발급**



4 제3자 확인으로 협력사 부담완화와 확인서의 신뢰성 제고 기대

□ 확인서 유통과정에서 **제3의 전문기관의 보증***을 통해 확인서에 대한 **대내외적 신뢰도 제고 기대**

* 법적증명이 아닌 확인기관의 공신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사실상의 증명

○ **협력사**는 **전문가의 도움**으로 보다 **정확한 원산지 판정**이 **가능**해지고, 이에 따라 **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**가 **완화**될 것으로 기대

○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**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**로 원산지 **사후검증**에 대한 **리스크 관리 가능**

5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유동훈 사무관(☎ 02-2110-450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